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5/31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 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 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재산세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

(○ ○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부동산, 기타 - 년 월)

고지번호	납부구분	신고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적용세율	등록 면허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기등록일								
고지번호	비과세세액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기·등록사유/건수	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 ○ 동)

처리 번호	처리일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등기·등록일	물건의 소재지	관련법령	비과세 사 유	비과세		결 재		
		주소	전화번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지 방 교육세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등록면허세(등록) 종과세내역서

고지번호	납부구분	신고일	납기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표	적용세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세가산세	종과해당일
		등기등록일										종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			전화번호		비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 ○ 동)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면허명칭	종·호	면허일	세 액	납부일	결 재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 ○ 동)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면허명칭	면허일	종·호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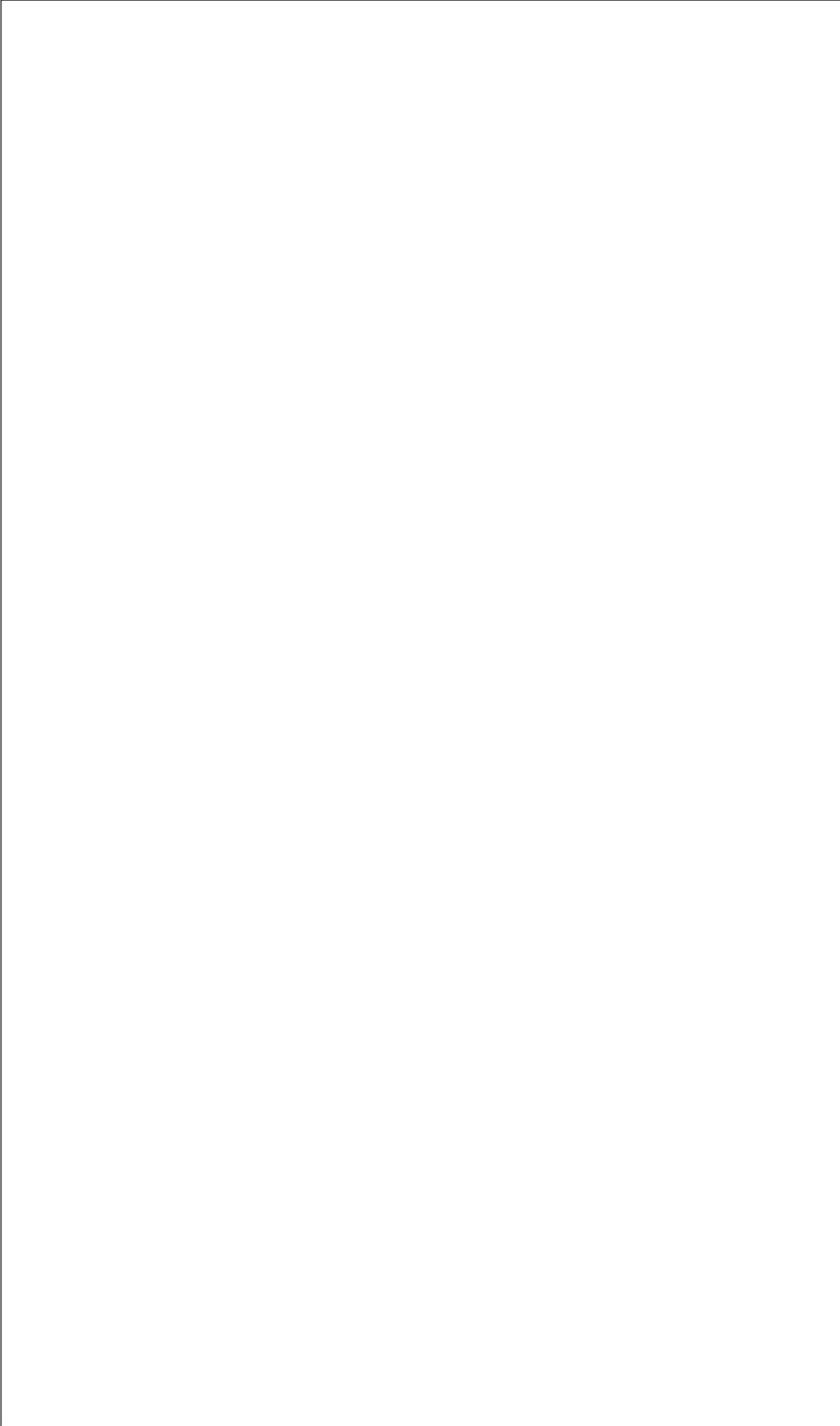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건축물조사표

건축물실측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 자			현 소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주택조사표

주택실측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선 박 조 사 표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재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p>조사년월일</p> <p>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p> <p> 직 성명 (서명또는 인)</p>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 호	납세자 주소	과 표 세 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건물 면적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재 산 세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 [별지 제12호 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담당자	팀 장	과 장

(단위 : 원, m²)

신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물납 허가내역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목 과세 대상	과세 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당초 납부 세액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통지일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등기일 (물납일)
		주소지										토지	건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명료한 입법안 마련

□ 주요내용

- 가.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 나. 구세의 수납·과오납금, 세입마감사무 규정 등 삭제
- 다. 징수 유예 및 납세담보, 체납처분, 체납자 행정규제 규정 등 삭제
-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세칙으로 별도 제정